

현우소 내의 완성, 인간의 완성
4-STEP

법정

내 신 일 등급 을 위 한
최 고 의 디 렉 션 현 우 소

Chapter

I

단권화
고난도 주제
개념트리 및
셀프테스트

형법 단권화 개념트리

1) 형법&죄형법정주의

1. 의미 :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

2. 역할 : 범죄 예방 및 방지. 국가 형벌권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국가의 자의적 형벌권 남용 방지→ 보장적 기능

3. 죄형법정주의 ; 헌법§12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① 성문법률주의(=관습형)
→ 법률에 근거가 없
형§1① 범죄의 성립과
- ② 명확성의 원칙 : 범죄
- ③ 소급효 금지의 원칙 :
cf) 소급 입법이 정의
헌§13① 모든 국민의
형§1① 범죄의 성립과
형§1② 범죄후 법률의
- ④ 유추 해석 금지의 원
cf) 피고인에게 유리
- ⑤ 적정성의 원칙 : 범죄

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형벌이 의회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형식으로도 처벌할 수 없음.
의한다.

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함

적용해서는 안 됨 → 범죄와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함 not 재판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
의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항을 그것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안 된다는 원칙

2) 범죄의 성립요건 → 순

1. 구성요건의 해당성 : 법률

정한 행위에 해당해야 함

2. 위법성 : 사회 법질서에

해당 → 위법성 추정)

cf) 위법성 조각 사유

- ① 정당방위 : 자신
- ② 긴급피난 : 자신
- ③ 자구행위 : 자신
- ④ 피해자의 승낙 :
- ⑤ 정당행위 : 법령
ex) 교도관의 업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여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행위
해를 허락한 경우

사회 상규로 위배되지 않는 행위

변호인, 현행범 체포, 교사의 경미한 체벌 등

기대 가능성

3. 책임성 : 사회적 비난 가

cf) 책임 조각 사유

- ① 형사미성년자만
- ② 심신 장애로 인하
- ③ 저항할 수 없는

는 자의 행위

생명, 신체에 대한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

3) 형벌과 보안처분

1. 형벌의 종류

- ① 사형 : 법정 최고형
- ②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교도소 구금
- ③ 징역 : 강제 노역 + 30일 이상의 교도소 구금
- ④ 금고 : 노역이 없는 30일 이상의 교도소 구금
- ⑤ 자격상실, 자격정지
- ⑥ 벌금 : 5만원 이상의 재산형
- ⑦ 과료 :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
cf) 행정상의 처분인 과태료와 구분됨
- ⑧ 몰수 : 범죄와 관련된 물건과 수익금을 몰수

2. 보안처분

- 형벌 이외의 형사 제제로 형벌과 동시에 행해질 수 있음
- 형벌과 마찬가지로 형사 제제이므로 국가만 수행 가능
- 형벌이 아니므로 책임이 조각되어도 처분 가능
ex) 보호관찰, 치료 감호 등

형법 단권화 개념트리 셀프테스트

1) 형법&죄형법정주의

1. 의미 :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

2. 역할 : 범죄 예방 및 방지, 국가

3. _____ ; 헌법§12① ~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① _____ (= _____

→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명
형§1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② _____ : 범죄와 형

③ _____ : 형법의

cf) 소급 입법이 정의에 더

헌§13① 모든 국민의 _____

형§1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

형§1② 범죄후 법률의 변경

④ _____

cf) _____ 에게 유리한 _____

⑤ _____ : 범죄에

자의적 형벌권 남용 방지→ 보장적 기능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벌은 _____ 의 법률에 의함 not _____
법보다 경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소추되지 아니하며 ~

구법보다 [중한/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2) 범죄의 성립요건 → 순서대

1. _____ : 법률에서

2. _____ : 사회 법질서에 위반하

cf) 위법성 조각 사유

① _____ : 자신 또는

② _____ : 자신 또는

③ _____ : 자신의 _____

④ _____ : 피

⑤ _____ : 법령이나

ex) _____, _____

한 행위

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행위

_____ 등

3. 책임성 : 사회적 비난 가능성,

cf) 책임 조각 사유

① _____ (_____

② _____ 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③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_____ 의 _____ 에 대한 _____ 에 의해 강요된 행위

3) 형벌과 보안처분

1. 형벌의 종류

① 사형 : 법정 최고형

② 구류 : 1일 이상 _____ 미만의 교도소 구금

③ 징역 : _____ + _____ 의 교도소 구금

④ 금고 : 노역이 없는 _____ 의 교도소 구금

⑤ 자격상실, 자격정지

⑥ 벌금 : _____ 이상의 재산형

⑦ 과료 : _____ 이상 _____ 미만

cf) 행정상의 처분인 _____ 와 구분됨

⑧ 몰수 : 범죄와 관련된 물건과 수익금을 몰수

2. 보안처분

· 형벌 이외의 형사 제재로 형벌과 동시에 행해질 수 있음

· 형벌과 마찬가지로 형사 제재이므로 _____ 만 수행 가능

· 형벌이 아니므로 책임이 조각되어도 처분 가능

ex) _____, _____ 등

조문 연구 3: 헌법 및 형법 총칙 조문

헌법

제 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 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 시의 법률에 의한다.
-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벌
-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아니한다.

-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하지 아니한다.
-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형을 감경한다.
 -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형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는 별하지 아니한다. 단,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제15조(사실의 착오)** ①특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별하지 아니한다.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별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별하지 아니한다.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업무로 인한 행위
별하지 아니한다.

에 대한 현재의
당한 이유가 있는

정황에 의하여 그

안스러운 상대하
한 때에는 별하지

에 대한 현재의
가 있는 때에는

대하여는 전항의

준용한다.

구권을 보전하기
는 현저한 실행공
있는 때에는 별

는 정황에 의하여

의 승낙에 의하여
규정이 없는 한

행위를 종료하지
에는 미수범으로

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하지 아니한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

제30조(공동정범)

각자를 그 죄의

제31조(교사범) ①

를 실행한 자와

②교사를 받은

에 이르지 아니

예비에 준하여

③교사를 받은

도 교사자에 대

제32조(종범) ①

티

한다.

②종범의 형은

제33조(공범과 신

공한 행위는 신

적용한다. 단,

에는 중한 형으

제34조(간접정범,

어느 행위로 인

로 처벌되는 자

발생하게 한 자

다.

②자기의 지휘,

항의 결과를 발

한 형의 장기 또

인 때에는 정범

제41조(형의 종류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 업무에 관한 자격
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
되는 자격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
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따른다.

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
이하로 한다.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

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수 있다.

30일 미만으로 한다.

5만원 미만으로 한다.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

공하려고 한 물건.
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

건.
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

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그 부분을 폐기한다.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②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③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현우소 내의 완성, 인간의 완성
4-STEP

법정

내 신 일 등급 을 위 한
최 고 의 디 렉 션 현 우 소

Chapter

II

마더텅 선지정리
OX퀴즈

1) 형법과 형사소송법

	기출코드	선지	O/X
1	1307#8(5)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2	1307#8(5)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불소급 원칙의 차이는 이가 다음 같은 범죄는 저크저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 이다.	
3	1806#19(21)	범죄 현장에서 적법한	해당하지 않는다.
4	14예비#17(29)	보안처분은 국가 또는	
5	14예비#17(29)	보안처분은 행위자에게	
6	0909#19(30)	징역에 대해 그 집행을	
7	0909#19(30)	징역과 사형의 경우 법	
8	1506#16(7)	수사단계와 기소단계 사	은 석방된다.
9	1506#16(변)	수사단계와 기소단계 사	은 석방된다.
10	1404#17(8)	공판단계에서 구속 상태	
11	1806#17(14)	경찰이 구속 수사 후 사	이 필요하다.
12	1806#17(14)	국민 참여 재판에서 민	
13	1806#17(변)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	
14	1606#13(15)	기소유예를 받은 갑과 1	청구할 수 있다.
15	1606#13(15)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	였다.
16	17수능#13(19)	절도죄로 기소되어 벌금 하여 금고에 처한다는	않는다면 검사는 갑에 대
17	1310#14(20)	선고유예는 징역 3년에	
18	1310#14(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	지나면 면소된다.
19	16수능#16(23)	기소 전 조사 결과에 따	청구할 수 있다.
20	16수능#16(23)	검사는 갑(18세)을 기소	
21	16수능#16(23)	갑(18세)이 부과 과제	고될 수 있다.
22	1606#16(24)	절도 피해를 입은 을은	
23	1607#8(27)	보호 처분 결정에 불복	
24	1709#14(28)	검사가 C(18세)를 기소	수 있다.
25	1709#14(28)	A(13세), C(18세)는 소	
26	15수능#16(30)	검사는 소년부 송치와	력, 생활, 환경 등을 조사하
27	15수능#16(30)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갑	
28	1504#10(31)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29	11수능#20(32)	형사부에서는 갑(만 17	호 위탁을 명할 수 있다.
30	1507#15(15)	성인 범죄 사건의 판결	을 청구할 수 있다.
31	1707#17(34)	갑(13세)은 수사 단계에서 형사부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질 수 있다.	
32	1009#5(37)	배심원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한다.	
33	1409#16(39)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사건의 피고인은 일정 기간 내에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형법과 형사소송법 토풀X1

	기출코드	선지	O/X
1	1307#8(5)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2	1307#8(5)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불소급이다.	극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
3	1806#19(21)	범죄 현장에서 적법한 절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14예비#17(29)	보안처분은 국가 또는 지방	
5	14예비#17(29)	보안처분은 행위자에게 범죄	있다.
6	0909#19(30)	징역에 대해 그 집행을 유여	
7	0909#19(30)	징역과 사형의 경우 법정형	
8	1506#16(7)	수사단계와 기소단계 사이에	이면 을은 석방된다.
9	1506#16(번)	수사단계와 기소단계 사이에	이면 을은 석방된다.
10	1404#17(8)	공판단계에서 구속 상태를	수 있다.
11	1806#17(14)	경찰이 구속 수사 후 사건을	영장이 필요하다.
12	1806#17(14)	국민 참여 재판에서 민법상	다.
13	1806#17(번)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단	
14	1606#13(15)	기소유예를 받은 갑과 1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5	1606#13(15)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수 없다.
16	17수능#13(19)	절도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하여 금고에 처한다는 결정.	부하지 않는다면 검사는 갑에 대
17	1310#14(20)	선고유예는 징역 3년에 해	
18	1310#14(번)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최)년이 지나면 면소된다.
19	16수능#16(23)	기소 전 조사 결과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	16수능#16(23)	검사는 갑(18세)을 기소 유	있다.
21	16수능#16(23)	갑(18세)이 부과 과제 명령	가 선고될 수 있다.
22	1606#16(24)	절도 피해를 입은 을은 범죄	
23	1607#8(27)	보호 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	
24	1709#14(28)	검사가 C(18세)를 기소할	받을 수 있다.
25	1709#14(28)	A(13세), C(18세)는 소년법	다.
26	15수능#16(30)	검사는 소년부 송치와 달리	행, 경력, 생활, 환경 등을 조사하
27	15수능#16(30)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갑(17	
28	1504#10(31)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판사	
29	11수능#20(32)	형사부에서는 갑(만 17세)에	의 감호 위탁을 명할 수 있다.
30	1507#15(15)	성인 범죄 사건의 판결에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1	1707#17(34)	갑(13세)은 수사 단계에서	다.
32	1009#5(37)	배심원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한다.	
33	1409#16(39)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사건의 피고인은 일정 기간 내에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현우소 내신의 완성, 인간의 완성
4-STEP

법정

내신 일등급을 위한
최고의 디렉션 현우소

Chapter

III

마더텅 선지정리
OX 퀴즈 정답

1) 형법과 형사소송법 정답

	기출코드	선지	O/X
1	1307#8(5)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직서우지이 모전옥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2	1307#8(5)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불소급이다.	
3	1806#19(21)	범죄 현장에서 적법한 절차	
4	14예비#17(29)	보안처분은 국가 또는 지방	
5	14예비#17(29)	보안처분은 행위자에게 범죄	
6	0909#19(30)	징역에 대해 그 집행을 유예	
7	0909#19(30)	징역과 사형의 경우 법정형	
8	1506#16(7)	수사단계와 기소단계 사이에	
9	1506#16(변)	수사단계와 기소단계 사이에	
10	1404#17(8)	공판단계에서 구속 상태를	
11	1806#17(14)	경찰이 구속 수사 후 사건을	
12	1806#17(14)	국민 참여 재판에서 민법상	
13	1806#17(변)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단	
14	1606#13(15)	기소유예를 받은 갑과 1심	
15	1606#13(15)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16	17수능#13(19)	절도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하여 금고에 처한다는 결정	
17	1310#14(20)	선고유예는 징역 3년에 해당	
18	1310#14(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최	
19	16수능#16(23)	기소 전 조사 결과에 따라	
20	16수능#16(23)	검사는 갑(18세)을 기소 유	
21	16수능#16(23)	갑(18세)이 부과 과제 명령	
22	1606#16(24)	절도 피해를 입은 을은 범죄	
23	1607#8(27)	보호 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	
24	1709#14(28)	검사가 C(18세)를 기소할 경	
25	1709#14(28)	A(13세), C(18세)는 소년법	
26	15수능#16(30)	검사는 소년부 송치와 달리	
27	15수능#16(30)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갑(17	
28	1504#10(31)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판사	
29	11수능#20(32)	형사부에서는 갑(만 17세)에	
30	1507#15(15)	성인 범죄 사건의 판결에서	
31	1707#17(34)	갑(13세)은 수사 단계에서	
32	1009#5(37)	배심원의 평결이 유죄인 경	
33	1409#16(39)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사건	